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5750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유태훈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천

변론 종결 2021. 5. 27.

판결 선고 2021. 6. 2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66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0. 11. 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3. 23. 24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 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9. 6.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신용보증 한도를 64,000,000원, 보증기간을 2019. 6. 18.부터 2020. 6. 17.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등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개별수출신용보증약정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0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자로서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아래 <표 1> '보증채무최고액'란 기재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표 1>

순번	약정일	신용보증 한도	보증채무최고액	보증기간	비고
1	2019. 6. 12.	64,000,000	83,200,000	2019. 6. 18. ~ 2020. 6. 17.	갑 제4호증
2	2019. 7. 11.	60,000,000	78,000,000	2019. 7. 17. ~ 2020. 7. 16.	갑 제5호증
3	2019. 8. 16.	112,000,000	145,600,000	2019. 8. 17. ~ 2020. 8. 16.	갑 제6호증
4	2019. 10. 11.	900,000,000	1,170,000,000	2019. 10. 14. ~ 2020. 10. 13.	갑 제8호증
5	2020. 2. 17.	63,000,000	81,900,000	2020. 2. 20. ~ 2021. 2. 19.	갑 제7호증
6	2020. 3. 6.	52,000,000	67,600,000	2020. 3. 19. ~ 2021. 3. 18.	갑 제2호증
7	2020. 4. 14.	40,000,000	52,000,000	2020. 4. 17. ~ 2021. 4. 16.	갑 제1호증
8	2020. 5. 14.	40,000,000	52,000,000	2020. 5. 17. ~ 2021. 5. 16.	갑 제3호증
합계		1,331,000,000	1,730,3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황)

1 피고 A과 피고 B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2 피고 A과 피고 B는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 상환하겠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보상요령을 두고 있으며, 국내보상요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 피고 A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10%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처분

1) 피고 C은 2003. 4. 4. D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08. 11. 15. 남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증여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B는 2020. 3. 20. G,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14,000,000원에 매도하기 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314,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용자금 225,000,000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한다.

잔금 309,000,000원은 2020. 3. 23.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4. 매도인은 근저당권설정 1건(은행)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을 잔금과 동시 이행으로 상환하고 말소한다.

6. 본 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매매잔금일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점유개정 하기로 하며 전세 임대차한다.

(을다 제: 240,000,000원은 매매잔금에서 상계처리한다.

3) 피고 C은 2020. 3. 23.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3. 23.부터 2021. 1. 2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 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항에 따라 위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및 무역금융 명목의 대출금 합계 1,331,000,000원의 대출기한을 연장받았다.

2) 기업은행은 피고 A이 2020. 6. 2.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자 같은 달 11. 원고에 게 대출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7. 29. 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합계 1,341,665,0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표 2>

순번	대출채권 종류	원금(원)	이자(원)	원리금 합계(원)
1	중소기업자금대출	64,000,000	440,620	64,440,620
2	중소기업자금대출	60,000,000	433,170	60,433,170
3	중소기업자금대출	112,000,000	780,490	112,780,490
4	무역어음대출	900,000,000	7,650,730	907,650,730
5	중소기업자금대출	63,000,000	424,200	63,424,200
6	중소기업자금대출	52,000,000	351,750	52,351,750

7	중소기업자금대출	40,000,000	297,260	40,297,260
8	중소기업자금대출	40,000,000	286,810	40,286,810
합계		1,331,000,000	10,665,030	1,341,665,030

[인정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341,66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 다음날인 2020.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1. 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인 24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처인 피고 C이 G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 B가 피고 C 대신 240,000,000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 B가 위와 같은 금원지급행위(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20. 3. 23.경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6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는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 이법원의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6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권 1,261,080,960원2)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할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한편, 이 사건 제7, 8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이후인 2020. 4. 14.경 및 2020. 5. 14.경 체결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금원지급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7, 8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 A은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 A을 운영하는 피고 B 역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 A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

다) 실제로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6. 2. 피고 A이 원리금 상환 여력 부족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되었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최소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1,261,080,96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3)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피고 B가 피고 C에게 차용금 채무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B가 피고 C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C 주장

(1) 피고 C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피고 B에게 2008. 11. 17.경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 후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자 피고 B가 그 반환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C이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대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각종 비용도 피고 B 대신 부담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위 차용금채무 등을 변제받는 의미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지급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피고 B가 피고 C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 C이 피고 B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갑 제12, 13호증, 을다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피고 C이 아닌 피고 B이고, 피고 B가 G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240,000,000원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B는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69,000,000원을 자신의 K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을다 제5호증).

(2)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시점은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3. 4. 4.부터 무려 5년이 경과한 후이다. 피고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가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양도세 등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부부인 피고 C,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 피고 B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자력이 있었던 피고 C이 중개수수료 등을 충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부부간 증여 후에도 일방 배우자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종전소유자인 배우자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증여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12호증, 을다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차용금 등 채무를 변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1)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B는 2016. 11. 16. '피고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2년 내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다 제2호증의 1)을 작성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B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 B는 2019. 2. 20. '피고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기간 1년, 이자 연 12%로 월 1,0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다 제3호증의 1)을 작성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 C은 2020. 3. 23.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K조합, 채무자 피고 B인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인 101,140,811원을 변제하였다(을다 제5호증).

(2) 피고 C이 피고 B에게 대여하거나 피고 B 대신 변제한 금액이 합계241,140,811원(= 대여금 140,000,000원 + 대위변제금 101,140,811원)으로서 피고 B가 피고 C에게 지급한 금액인 240,0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3) 피고 C, B가 부부 사이라거나 2016. 11. 16. 대여 당시 피고 C이 아들인 L으로부터 50,0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만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 B가 피고 C과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인지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수익자의 변제 전후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 B와 피고 C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로 판단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20. 3. 23.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 A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 A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 6. 2.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되었다.

(2) 피고 B의 2016. 11. 16.자 차용증에는 이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한편, 2019. 2. 20.자 차용증에는 이자의 기재가 존재하나,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 C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20. 3. 23. 당시까지 피고 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가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변제독촉도 받지 않는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고 B는 자신의 K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이 사건 매매대금총액 314,000,000원 중 69,000,000원을 사용하였는바(을다 제5호증) 나머지 매매대금 245,000,000원(= 314,000,000원 - 69,000,000원)에서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240,000,000원 전부를 자신의 처 피고 C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6)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 B가 피고 C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314,000,000원에서 이 사건 K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0,000,000원을 공제한 144,000,000원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피고 B가 이 사건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아니라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지급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K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5)

마.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 B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석, 판사 김현희, 판사 강석규

1) 원고는 소장에서 '2020. 3. 23.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의 피고B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와 B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고(2021. 5. 25.자 준비서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등 참조), 피고 C에 대하여 '2020. 3. 23.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행한다.

2) =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64,440,620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60,433,170원 +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112,780,490원 +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907,650,730원 + 이 사건 제5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63,424,200원 + 이 사건 제6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52,351,750원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4)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6. 17. '피고 C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겠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을다 제10호증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등기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 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

5) 피고 C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원용하기에 부적합하다.